

대통령령 제 호

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

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, 음성녹음 이외의 방법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에 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·유지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대통령령 제2347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“2022년”을 “2027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③ ~ ⑩ (생략)	<u>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.</u> ③ ~ ⑩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보험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962